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핵심(요약)설명서**

원금손실가능상품	본 위험고지 안내문은 금 현물시장 거래를 하려는 고객에게 금 현물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고객이 금 현물시장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의 위험 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자료입니다.
	[주의] 본 상품에 대해 고객님의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금 현물	금현물은 금지금(金地金) 중 한국거래소가 정한 품질 및 외형요건을 만족하는 순도 99.99%, 중량 1kg 또는 100g 인 골드바(Gold bar)를 말합니다.
	품질인증기관(한국조폐공사)의 기술요건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 등을 거친 생산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골드바 또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의 골드바만을 거래합니다.

■ 유사상품과의 비교표

구 분	금 현물	장내파생상품(금선물)	국내주식
법적성격	금 현물 (원금손실가능)	파생상품 (투자원금 초과손실 가능)	증권 (원금손실가능)
만기	없음	있음	없음
주요상품	골드바 등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코스피200종목 등
거래대상	매도·매수 가능	매도·매수 가능	매도·매수 가능
특징	거래조건 표준화, 일중 가격제한폭 존재	기초자산, 거래단위, 만기 등 표준화	거래조건 표준화, 일중 가격제한폭 존재

■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사항 [민원 우려로 속지 필요사항]

발생가능한
불이익



- ① 금은 과거 **화폐적 기능**을 담당하여 국내외 경제 급변 상황에서 중요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금가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① 금지금(골드바)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 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② 금 실물의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본인 소유의 **금지금(골드바)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평균매수 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해 주문·체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위탁매매수수료, 보관수수료 및 실물인출시 납부하는 수수료 등 **모든 수수료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 ④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이외에 타인계좌로의 계좌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담&민원



고객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영업점 • 고객센터 (TEL : 1588-6800) •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 설명서

* 본 설명서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에 관하여 작성된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대상이 실물(Physical goods)인만큼 그 구조나 위험 등에
어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서,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
에 관하여 본 설명서 및 관련법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의 위험성

1. 가격변동 위험

- ▶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해당 금지금(골드바)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금의 화폐적 기능에 따른 위험

- ▶일반적으로 금은 과거 화폐적 기능을 담당하여 국내외 경제급변상황에서 중요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금가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II. 금 현물시장 개요

1.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본 설명서 상의 금 현물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KRX금시장" 이하 함)을 의미하며,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일반회원(투자중개업자; 증권사·선물사)에 대한 매매거래 위탁을 통해 동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

2. 주요 거래제도

가. 매매거래 대상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 제1항에 따른 금지금(金地金) 중 한국거래소가 정한 품질 및 외형요건을 만족하는 순도 99.99%, 중량 1kg 또는 100g 인 골드바(Gold bar)를 말합니다.
-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생산하거나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수입한 금지금(골드바)로서 순도, 중량, 브랜드, 제조일련번호 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 골드바(Gold bar) 품질 관리

- 국내에서 생산된 골드바 : 품질인증기관(한국조폐공사)의 기술요건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 등을 거친 생산업자가 생산한 골드바만 거래
- 해외에서 수입되는 골드바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의 골드바만 거래

나. 매매거래단위, 호가수량단위, 실물인출단위

- ▶ 매매거래단위 및 호가수량단위는 1g이고 호가가격단위는 10원이며, 1g당 원화(예 : 50,000원)로 가격을 표시하고 1회에 최대 5,000g(5kg)까지 호가가 가능합니다.

- ▶ 실물인출단위는 종목별 인수도 단위 입니다.
(1kg종목: 1kg당 실물인출 가능, 100g종목: 100g당 실물인출 가능)

다.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

- ▶ 매매거래시간
시가단일가매매 : 08:30~09:00(30분)
접속매매 : 09:00~15:20
종가단일가매매 : 15:20~15:30(10분)
- ▶ 호가접수시간: 08:30 ~ 15:30
- ▶ 매매거래 개시 전 30분간 시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고 매매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종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으며, 그 이외에는 접속매매 체결을 위한 호가를 접수받습니다.

라. 호가의 종류 등

- ▶ 호가는 지정가호가(종목·수량·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만 가능하고 전량충족조건(FOK : Fill or Kill) 또는 일부충족조건(IOC : Intermediate or Cancel)의 호가조건 부여도 가능합니다.
- ▶ 호가는 접수 시점부터 매매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 ▶ 금 실물사업자의 생산 등을 위해 필요한 즉시 수요를 고려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 한하여 금 실물사업자에게 동일한 가격에서 우선 체결권을 부여합니다.

마. 호가의 제한

- ▶ 호가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10%이고 기준가격은 전일 종가이며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기준가격이 됩니다.
- ▶ 전산시스템 장애 또는 매매거래 폭주로 매매거래가 중단될 경우에는 모든 호가접수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바. 매매체결방식

- ▶ 시가·종가 결정시 및 매매거래중단 후 재개시 최초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으로 체결되고, 그 이외의 매매거래는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접속매매)방식으로 체결됩니다.

- ▶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매매목적·시간우선의 원칙,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시간우선의 원칙으로 체결됩니다.

사. 결제방식

- ▶ 매매거래 후 금 실물이 필요한 금 실물사업자의 참여에 따라 금 현물시장의 **결제일은 매매거래가 체결된 당일이며, 오전 및 오후 2회(11:30, 16:30)로** 나누어 결제합니다.
- ▶ 결제 후 매수자는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골드바)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매도자는 현금을 이체 받게 됩니다.

아. 실물 인출

- ▶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골드바) 중 본인의 지분에 대해 실물인출단위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 ▶ **당일 15시까지 실물 인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일 오전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 * 실물인출의 경우 운송업체 및 고객 직접실물인도(한국예탁결제원 본원)의 방식으로 인출 가능합니다.
- * 운송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실물 운송이 지연되는 경우, 인출 가능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한번 인출된 금지금(골드바)은 다시 입고하여 거래소시장에서 거래시킬 수 없습니다.**

3. 거래방법

가. 주문의 방법

- ▶ HTS, FAX, 문서 등의 방법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 ▶ 금 현물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격금지금생산업자 및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매도한 금지금(골드바)만 거래되므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도할 수 없음에 따라 **최초 매매거래는 매수부터** 가능합니다.

나. 위탁증거금 납입

- ▶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전액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고(현금 위탁증거금을 100%),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금지금(골드바) 한도 내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4.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조세 관련 유의사항

가.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 ▶ 금지금(골드바)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나. 금 실물 인출시 부가가치세 납부

- ▶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본인 소유의 금지금(골드바)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해 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회사에 주문·체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위탁·보관수수료 및 실물인출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 ▶ 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주문수탁 및 금지금(골드바) 실물 인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매매수수료	오프라인	0.45% (영업점/고객센터/스마트상담센터)
	온라인	0.15% (HTS)
보관수수료		계좌별 매일잔량을 시가(KRX금시장의 직전 거래일 장종료시 가격 기준)로 환산한 금액의 0.0002% ※ 징수 시기 : 매월 첫 영업일
출고수수료		종목별 인수도 단위 당 2만원
기타수수료 (출고 시 발생)	운송 수수료	내륙 : 건당 8만원 제주도 : 건당 25만원 ※단, 5kg 초과시 1kg당 3,000원 가산 ※실물 고객 직접 인도시 운송수수료 제외(한국예탁결제원 본원)
	보관수수료	하루당 1만원 ※인수일 포함 4일째 되는 날부터 가산(휴일포함)
	재운송수수료	건당 4만원(5kg 초과시 1kg당 1,500원씩 가산) ※재수령 신청 시 발생

※ 모든 수수료는 VAT 10% 별도입니다.

※ 보관수수료 및 재운송수수료는 고객이 출고 신청 후 고객의 사정으로 수령 지연시에만 부과

나. 장외 계좌간 대체 금지

- ▶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이외에 타인계좌로의 계좌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예탁재산 관련 사항

- ▶ 금 현물 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6800) 통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 홈페이지(<https://securities.miraeasset.com>) 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의 특징·위험, 적합한 투자자 여부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상품의 주요내용과 상품의 위험도, 최대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판매직원 안내
 -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미래에셋증권 _____
 -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인 또는 서명)
 - ◆ 판매직원 연락처 : _____

※ 본 계약서류(설명서 등)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